

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(2008. 11. 5)됨에 따라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수를 10명 이상 20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였으며, 대표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인 군수를 부군수로 변경하고, 또한 상근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으로서
-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, 상위법령의 규정과 내용에 맞게 일부개정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만, 안제8조 제1항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유급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 조례의 개정을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## 6. 질의 및 답변 :

- 문 : 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각각 30명 이하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요 ?
- 답 : 대표협의회 및 실무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위원수의 상환선(30명)을 확대 하였습니다.
- 문 : 협의체에 유급간사를 둘 필요성이 있는지요?
- 답 : 사회복지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과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간사를 두도록 할 계획이며, 또한 인근 시군에도 조례 개정 및 유급간사(남해)를 두고 있으며 상부기관의 편람에서 권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
- 문 : 협의체 정수가 확대되고 또한 유급간사를 둔다면 사무실이 필요할 것입니다. 사무실 구입과 유급간사 인건비 등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실정으로 본다면 유급간사를 둔다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며 향후 타 시군의 여건을 보고 복지업무의 비중이 많을 경우에 검토함이 좋을가 합니다. 또한, “유급간사를

둔다.” 라고 해도 공무원이 관여해야 하는 업무인 만큼 현행 조례대로 공무원이 간사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.

- ◎ 답 : 상위법과 타 시군 조례개정에서도 유급간사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조례에 “유급간사를 둔다.” 라고 해도 당장에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

## 7. 수정안의 요지

조례안 제8조 제1항 “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 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” 를 “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” 로 수정함.

## 8. 심사결과

- 2009. 3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

덧붙임 :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
##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##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간사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.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대표협의체에 상근의 유급 간사를 둘 수 있으며, 대표 협의체의 유급간사는 실무 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한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	<p>제9조(간사) ① ----- ----- -----</p> <p>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고성군 조례 제 호

#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1조의3 및 제1조의4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항 후단 중 “두며 기능은 【별표2】와 같다.”를 “둔다.”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(이하 “대표협의체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 또는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 등의 연계·협력에 필요한 사항
3.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,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4.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

제3조제1항과 제4항 중 “10인 이상 20인”을 “10명 이상 30명”으로 하고, 제2항과 제5항 중 “각호의1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며, 제2항 중 “군수, 주민생활과장”을 “부군수, 주민생활과장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각1인”을 각 1명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제3조제2항 내지 제3조제5항에”를 “제3조제2항부터 제2조제5항까지에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잔여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간사)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1인의 간사를 둔다.

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.

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.

제14조 중 “예산의 범위 내에서” 를 “예산의 범위 안에서” 로 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